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7일)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7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문화시설로 시민회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문예전시관이 있으며 오정아트홀이 개관 예정임.

○ 이들 시설마다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문화시설의 추가 설치시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문화시설 전체현황을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이며,

○ 새로 문화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본 조례에 추가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문화의집, 부천시문예전시관, 오정아트홀의 사용범위와 기능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

· 문화시설을 사용시 납부할 사용료를 정함(안 제11조제1항)

· 문화시설 사용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함(안 제14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1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설의 민간위탁이 개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조항인지	○ 특정한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항을 두었음 ○ 개별시설을 위탁하는 사항이 아님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 요지

○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교육청 및 초, 중,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및 기타 다른 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도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100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18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17~~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문화시설은 부천시시민회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문화의집, 부천시문예전시관이 있으며 오정아트홀 문화시설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나,

○ 조례안에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있으나 원래의 명칭과 상이한 사항과 제7조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구성 및 운영관계를 명확화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을 부천시장으로 수정(안 제3조)

○ 시민회관을 부천시시민회관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문화의집을 부천시문화의집으로, 문예전시관을 부천역문예전시관·소사역문예전시관으로 수정(안 제5조)

○ 위원회 제목 수정 및 위원회구성과 회의개최 등의 사항을 신설(안제 7조)

○ 문화시설의 명칭 수정(별표 1)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중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부천문화의 집"을 "문화시설"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사업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제1호중 "시민회관"을 "부천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문화의 집"을 "부천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호중 "문예전시관"을 "부천역문예전시관·소사역문예전시관(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위원회"를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필요시에는"을 "필요한 시설에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표1】 중 "부천시민회관"을 "부천시시민회관"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방향)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방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위탁관리) ①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 문화시설 ----------. 다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대상사업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시설)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2.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 3. 문화의집에는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및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문예전시관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비 5. (생략)	제5조(시설) ---------- 1. 부천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 2.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 3. 부천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 4. 부천역문예전시관·소사역문예전시관(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 ----- 5. (제정안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①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운영) ① ---------- 필요한 시설에서는 ----------
〈신 설〉	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신 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별표1】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제 정 안		수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부천시민회관	부천시원미구 중동 788번지	부천시시민회관	(제정안과 같음)
복사골여성·청소년 문화센터	부천시원미구 상동 394-2번지	부천시복사골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제정안과 같음)
부천문화의집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부천문예전시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소사역문예전시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오정아트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방향)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시설운영

제5조(시설) 문화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2.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

3. 문화의 집에는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및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문예전시관에는 전시실 및 부대설비

5. 오정아트홀에는 본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의 시설 및 부대설비

제6조(사업)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영화상영
   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장소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복사골문화센타
   가. 문화예술진흥사업
   나.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
   다.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라.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
3. 문화의 집
   가.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문예전시관
   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나.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다.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라.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7조(위원회) ①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 ①문화의집 운영자는 3명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문화의집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②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①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의집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특별한 설치라 함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 특수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민회관, 문화센터, 오정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2. 문예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②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①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

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구,동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2.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3. 문예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행사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30을 반환
5. 부대시설의 경우 사용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6조(사용중단 신고) 문화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①문화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내에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장내 흡연자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타설치및운영조례, 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분·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부천시민회관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8번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
부천문화의집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
부천역문예전시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소사역문예전시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오정아트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

[별표 2]

문 화 시 설 사 용 료 (제11조 관련)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오정아트홀)

1. 기본시설

사 용 시 간	사 용 료(원)				비 고
	시민회관		복사골 문화센터 대공연장	오정 아트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120,000	60,000	100,000	40,000	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 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토요일,일요일, 국경일)의 경우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오후 (13:00-17:00)	150,000	80,000	120,000	60,000	
야간 (18:00-22:00)	200,000	110,000	150,000	80,000	
철야(22:00 이후) 시간당	50,000	30,000	40,000	20,000	

※ 부가가치세 별도

2. 부대설비

구 분	설 비 명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시민회관		복사골 문화센터 대공연장	오정 아트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악기	그랜드피아노 (STEIN WAY)	1일/1대	50,000				조율비 별도
	그랜드피아노(국산)		30,000				
	업라이트피아노		15,000				
	디지털피아노		15,000				
음향	기본사용료	1회	50,000	30,000	40,000	30,000	마이크3대,재생1대
	유선마이크 추가	1회/1대	3,000				
	무선마이크 추가	1회/1대	10,000				건전지 별도
	재생기기 추가	1회/1대	8,000				
	녹음	1회/1개	10,000				녹음용 미디어 별도
	이동식음향콘솔	1회/1대	20,000				
조명	종합조명	1회	80,000	50,000	70,000	50,000	별도전기료 없음
	일반조명	1회	40,000	25,000	35,000	25,000	객석조명만 사용시
	팔로우스포트	1회/1대	20,000				신청자 운용
	포그머신	1회/1대	10,000				포그액 별도
	드라이아이스	1회/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별도
	스트로보	1회/1대	10,000				
	기타 이펙트 라이트	1회/1대	10,000				
무대	무대부대설비	1일	20,000				
	댓마루	1회	15,000				합창단용계단 포함
	스크린	1회	20,000	10,000	15,000	15,000	
	회전무대	1회	-	-	20,000	-	
	음향반사판	1일	30,000	-	20,000	20,000	
	무용 고무판 (DANCE FLOOR)	1일	30,000	-	20,000	15,000	접착테이프 별도
영사	영사기(35mm)	1회상영	30,000	-	30,000	30,000	영사음향 포함
	영사기(16mm)	1회상영	15,000				
	환등기	1회/1대	10,000				
	OHP	1회/1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1대	20,000				
냉·난방료	연료비 및 전기료	1시간	실가				공연시간중 의무사용 기온에 따른 적용여부는 시설관리자가 결정
기타	귀빈실	1실/1일	30,000				시민회관A귀빈실제외
	분장실	2실/1일	20,000				남,녀분장실
	의자,연대,테이블	1일	10,000				
	현수막게첨	1개소	5,000				내부 및 외부 게첨
	영화, 비디오환영료	1회	10,000				
	TV,라디오 중계료	1회	10,000				
전기	전력사용료	사용량	실가				

※ 부가가치세 별도

3. 기타시설

구분		사용시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세미나실	소	2시간	30인용	20,000	· 공공요금 포함 · 강좌실 등 유사한 시설은 세미나실 기준을 적용한다
	중	2시간	50인용	30,000	
	대	2시간	80인용	40,000	
전시실		1일		40,000	· 공공요금 포함
합숙시설		1실/1박	6인기준	60,000	· 추가1인당 5,000원 ·청소년단체의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체육관		2시간		20,000	·공공요금중 냉·난방료별도 ·초과 1시간당 1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4. 스포츠센타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어린이	청소년	일반	
수 영	강 습	1인/월	40,000	45,000	55,000	· 주3회 강습
	자유이용	1인/월	35,000	40,000	45.000	· 어린이 : 초등학생이하 · 청소년 : 중·고등학생 · 일 반 : 대학생이상
	1일이용	1인/월	3,000	3,500	4,000	
스 쿼 시		1인/월	-	51,000	68,000	· 주3회 강습
에어로빅		1인/월	-	45,000	45,000	
헬 스		1인/월		35,000	50,000	

※ 부가가치세 별도

5. 평생교육수강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평생교육	1인/월 주3시간미만	12,000	· 초과1시간당 2,500원까지 징수 · 평생교육의 성격상 부대비용등이 소요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비를 조정할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무료

6. 보육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보육료	1인/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 단가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	시간 보육은 안분비율에 의거 징수

[별표 3]

문예전시관 사용료(제11조관련)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전시관 사용	1일	30,000	